



조남관 前 대검 차장 ‘절차적 정의, 주장이나 신념으로 실현 안돼’, 박범계 장관 정면 반박

법조인 동정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

대검찰청 전임 지휘부가 지난 7월 15일 ‘한명숙 前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전날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은 것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전날 법무부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차장이던 조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 前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 당시 대검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한 前 총리 수사팀을 무혐의 처분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법무부로부터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레 주임검사를 교체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된 검찰청법 조항 등을 언급하며 “대검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 연구관들의 회의를 통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양측 주장은 엇갈렸다. 박 장관은 전날 “공정한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 없이 대검 기조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거부하였고 임박한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고 했다.

다만 조 원장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을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증언연습’이라고 했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주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한 前 총리 사건 수사팀에서 일한 검사 두 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문은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 청구의 실익이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3년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징계 시도는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는 박 장관의 설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계 시도가 무위에 그치자 법무부가 합동감찰에 사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